

January 28, 2016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저작권법 제99조)의 해석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 법무법인 세종 승소 사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99조 이하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이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그 해석에 논란이 있어 왔으며, 특히 저작물의 ‘영상화’란 개념에 음악저작물이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는바, 최근 저희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한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음저협 영화관에 대한 공연사용료 지급 요구

국내 영화제작 실무상 영화제작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관리하는 음악을 영화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할 경우, 음저협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해 왔으며,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곡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저작권료를 책정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저협은 2010. 10.경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신청서와 사용승인서의 문구를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영화관들을 상대로 “영화제작시 복제권에 대한 사용허락만 한 것이지, 영화관들이 이를 상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허락을 한 바 없고, 음악이 삽입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삽입된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영화관 운영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GV’) 등을 상대로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따라 영화관에는 별도의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 없어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CGV 등 영화상영관을 대리하여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특례조항(저작권법 제99조 이하)이 적용되고, 음저협이 사용신청서와 사용승인서의 문구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악에 대한 복제사용 허락시 공연사용에 대한 허락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복제허락을 통해 공연에 대한 사용권까지 인정되는 이상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항변하였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은 CGV의 항변을 받아들여 음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저협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곡에 대한 주장을 상당 부분 철회하고,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된 곡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위 창작곡의 경우는 복제허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연권 외에 복제권 침해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1) 영화에 삽입될 목적으로 창작된 곡의 경우 그 본질상 창작될 당시부터 저작자로부터 영화에 사용되는 데 대한 복제허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영화제작자는 영화 음악감독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복제허락을 받았다는 점, (2) 저작자가 음저협에게 향후 작사·작곡할 곡에 대하여까지 포괄적 신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제3자인 영화제작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영화를 위해 새롭게 창작되는 곡의 경우 그 본질상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 영화를 위한 사용허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 (3) 영화에 삽입될 것을 전제로 하는 창작곡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점, (4) 창작곡의 경우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특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항변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음저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영화에 이용된 음악에 대해서도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영화관이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유지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 음저협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본 사건은 대법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쟁점이 상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는데, 사실인정 및 증거의 판단에 관한 원심판결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첫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개념상 ‘영상화’가 어려운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도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었으며, 음저협 측에서도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영상화’는 음악저작물을 영상화하여 2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음악저작물을 변형 없이 그대로 영화에 삽입하는 행위는 위 ‘영상화’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논리와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이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함으로써 음저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음악저작물을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은 형태로 영화에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에도 ‘영상화’에 해당하여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리가 명확하게 확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시사점 -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균형점 모색을 통해 보다 활발한 영상저작물의 유통 촉진을 가능하게 한 사례

이 사건은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으로서, 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에 걸친 상세한 논의를 통해 위 조항의 취지와 적용범위, 요건 등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의 유통 촉진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 등 저작권법 및 위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궁극적인 목적과 입법취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영화제작 실무에 맞는 보다 유연한 음악저작물의 사용 환경이 조성되어 영상저작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용호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661	E-Mail. yhekim@shinkim.com
● 임보경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41	E-Mail. bklim@shinkim.com
●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055	E-Mail. shim@shinkim.com
● 신지혜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1670	E-Mail. jhshin@shinkim.com
● 최자림 변호사	TEL. 02 316 1729	E-Mail. jrchoi@shinkim.com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